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 산 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17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청소년 복지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12.31.에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 있는 단체·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사무명

-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7조
-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 필요성
 -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상담 및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전문기관(법인)등에 위탁필요

☐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

-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민간위탁 사무내용
 -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
 - 이용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초지동)

○ 규모 : 연면적 799.13㎡(약242평)

구 분	시 설 현 황
지상 4층	사무실, 상담실, 놀이·미술치료실, 교육실, 화장실 등

○ 운영인력 : 34명

※센터장 1, 상담지원팀 6, 통합지원팀 3, 청소년동반자팀 16, 학교밖청소년팀 8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붙임 2】

☐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방침결정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7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년·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노동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1.4.21.>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제17조(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차 이행 후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서비스의 전문성,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시가 직접 운영 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채용 등 운영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운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위탁 운영 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민간 전문기관의 인적자원과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통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상담기법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상담 및 사례관리 실적,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 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승인 검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 분야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단체)가 존재하고,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검토 종합 의견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함께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며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객관적인 성과평가 가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공급 여건도 갖추어져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3】

(제2-1 쪽)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관련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 경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함
○ 민간위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약 3%를 적용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총 소요액		1,704,804	1,755,948	1,808,627	
민간위탁금	인건비	1,401,379	1,443,420	1,486,723	
	운영비	190,859	196,585	202,483	
	사업비	112,566	115,943	119,421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1,704,804	1,755,948	1,808,627	5,269,379
국비(기금)		407,225	419,442	432,025	1,258,692
도 비		69,263	71,341	73,482	214,086
시 비		1,366,842	1,407,847	1,450,084	4,224,779
세 출		1,704,804	1,755,948	1,808,627	5,269,379
인건비		1,401,379	1,443,420	1,486,723	4,331,522
운영비		190,859	196,585	202,483	589,927
사업비		112,566	115,943	119,421	347,930
재원 조달		1,704,804	1,755,948	1,808,627	5,269,379
의존 재원	소 계	476,488	490,783	505,507	1,472,778
	국비보조금	407,225	419,442	432,025	1,258,692
	도비보조금	69,263	71,341	73,482	214,086
		-	-	-	-
자체 수입	소 계	1,366,842	1,407,847	1,450,084	4,224,773
	지방세 수입	1,366,842	1,407,847	1,450,084	4,224,773
		-	-	-	-
		-	-	-	-
지방채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